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628

발의연월일: 2024. 12. 18.

발 의 자: 조계원 • 이기헌 • 주철현

김우영 · 김문수 · 윤준병

박지원 • 민병덕 • 양부남

임오경・양문석・박해철

민형배 • 정진욱 • 채현일

김윤덕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핑 방지를 위해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도핑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금지 약물 등을 복용 또는 사용하는 행위로 스포츠 경기의 기본 가치인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함. 또한, 도핑 물질은 심장마비, 간 손상, 불임 등 선수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도핑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도핑 행위와 도핑 알선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도핑을 한 선수와 도핑을 알선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도핑을 예방하고 공정한 경기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및 제49조의2).

법률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의 제목 "(선수의 도핑 검사)"를 "(도핑 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 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도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수의 치료 목적 및 오인·혼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경기단체의 임직원 및 감독·코치는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에 게 도핑을 알선하여 도핑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수의 치료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의2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3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도핑을 한 자
- 4. 제3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도핑을 알선하여 도핑을 하게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의2(선수의 도핑 검사) (생	제35조의2(도핑 금지 등) ① (현
략)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 <신 설></u>	②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도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만, 선수의 치료 목적 및 오인
	•혼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신 설></u>	③ 경기단체의 임직원 및 감독
	·코치는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에게 도핑을 알선하여 도
	핑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수의 치료 목적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u>니하다.</u>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	제49조의2(벌칙)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제3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도핑을 한 자

<u><신 설></u>	4. 제3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도핑을 알선하여 도핑을 하게
	<u>한 자</u>